## 상품대출사례공유 --사기사례를예시로

보고자: 법률부조기금회 전문 변호사 曾彥傑(증언걸) 변호사



# 이 사건의 기본 사실 (1)

경도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A씨가 사기집단의 말에 속아 투자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A가 사기 집단의 추천을 받고 금융 중개인 C와 D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또한 채무를 보증하는 약속어음에 서명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투자 목적으로 사기집단에 자금을 넘겼고 결국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 이 사건의 기본 사실 (2)

### A씨와 금융업자 C씨 사이 대출의 법률관계

- 검수 담당자인 E는 A씨에게 사전에 작성된 "중고 오토바이 매매 계약서", "중고 오토바이 할부 매매 계약서", "채무양도 계약서"를 건네주고 서명만 하게 했을 뿐, A씨가 이를 검토할 합리적인 기간을 주지 않았고, A씨에게 계약의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A씨는 처음에 C1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12만 대만 달러(단위:위안)로 판매하기 위해 "중고 오토바이 판매계약"에 서명했지만, 두 당사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C1가 일하고 있는 C2회사는 오랫동안 금융업자 C의 대출관련 문제를 처리해 왔습니다
- 동시에 A 씨는 C1으로부터 오토바이를 12만 위안에 매입하는 "중고 오토바이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36회에 걸쳐 매회 4,212 위안, 총 할부금은 151,632 위안입니다.
- 마지막으로, C1은 "양도계약"에 따라 A씨가 취득한 오토바이 할부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에 대한 채권을 금융회사 C로 이전하였습니다.
- C2 회사는 C3의 명의로 A 씨 계좌에 10만 위안를 이체했습니다.



# 이 사건의 기본 사실 (3)

#### ••••

### A씨와 금융업자 D 사이의 상품대부의 법률관계(허위 거래형)

- 검수 담당자 E는 A씨에게 미리 작성된 "상품 구매 할부금 신청서 및 계약서"와 "지급 지시에 관한 계약서"를 건네주고 서명만 하게 했을 뿐, A씨가 이를 검토할 합리적인 기간을 주지 않았고, A씨에게 계약의 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 "할부금 지급 신청 및 계약서"에 기재된 경소상D1과 "지급 지시 계약서"에 기재된 채무 양도인 D1에 관련 내용은 모두 E가 작성한 것이었고, E는 D1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 A씨가 "할부금 납부 신청서 및 계약서 "에 서명했을 당시에는 내용이 비어 있었으며, 상품명이나 할부 총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총액 등 내용은 나중에야 기입되었는데, A씨가 에르메스 가방을 38만 위안으로 구매했고, 10,450 위안씩 50회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할부 총액은 522,500 위안에 달합니다.
- "지불 지시 계약서" 가 A씨에게 건네줬을 때도 빈칸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 대부업자D는 9%의 이자를 공제하고 345,800위안을 A씨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A씨는 D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70,000 위안을 주었고, A씨는 실제로 275,800위안만 받았습니다.
- 위 계약서에 따라 A씨는 D1로부터 할부로 물품을 구매하고, D1은 A씨로부터 받은 할부매입 대금청구권을 D회사로 이전합니다.

### 상품 대출의 법적 효과에 대해 대만 법원의 견해



#### 허위 거래 유형

#### • 소비자 대출

대만 가오슝 지방 법원 2022년 제3158호, 2023년 제953호, 2023년 제33호 판결 대만 타이베이 지방 법원 2023년 제578호 2023년 제760호 2023년 제34호 2023년 제1621호 2023년 제565호

2023년 제1785호

### 할부 구매 유형

- **할부구매 계약**타이베이 지방법원 2023년 판결 제7138호
  대만 스린 지방 법원 2023년 판결 제1470호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 2022년 판결 제16342호
  대만 스린 지방 법원 2020년 판결 제241호
- 매매 및 소비자 대출의 하이브리드 계약 대만 고등법원 타이난 지방법원 2021년 판결 제1호
- 소비자 대출

대만 스린 지방 법원, 2024년 제184호)
2024년 판결 제421호 및 2023년 판결 제833호
대만 타이중 지방법원 2019년 제294호
대만 스린 지방 법원 2020년 제1155호
대만 스린 지방 법원 2023년 제1375호



### 소송요약

### 채권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제1심: 대만 타이베이 지방 법원, 2023년消字판결 제2호 (원고 A, 피고 C, D)

제2심: 대만 고등법원 2024년 易字판결 제1호 (항소인 C, 피항소인 A)

### 약속어음 채권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제1심: 대만 스린 지방법원 2023년 湖簡字판결 제458호(원고 A, 피고 C)

### 약속어음 채권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제1심: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 2023년 店簡字 판결 제690호(원고 A, 피고 D)

제2심: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 2024년 簡上字 판결 제139호(항소인 A, 피항소인 D)



# 채권의 부재를 확인(제1심)

### 할부구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금융적 할부구매형(원고 A, 피고 C)

증인 C1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와 중고차 할부 매매 계약서에 인장을 붙인 것은 오로지 회사 C의 대출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 A에게 분재의 오토바이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문서에 명시된 거래는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분쟁의 오토바이를 매각하거나 환매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C1이 원고 A로부터 분쟁 오토바이의 할부 구매 대금 청구권을 취득하여 C사에 양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 C는 C1이 원고로부터 분쟁 오토바이의 할부 구매 대금 청구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청구권 양도에 대한 C1의 항변 또한 근거가 없습니다.



• 허위거래 유형 (원고 A, 피고 D)

E 씨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 A 씨는 계약서 및 지시동의서에 서명할 당시 구매 품목, 금액, 할부 기간, 총액, 판매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 씨가 서명한 후, 증인 E 씨는 해당 서류를 회수하여 직접 구매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매 품목 그리고 판매자가 D1 등 정보입니다. D1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D1이 원고 A와 에르메스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D1이 원고 A에게 에르메스의 할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D1이 그 청구권을 피고 D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피고인 D는 D1이 실제로 원고 A에 대해 할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청구권 양도에 대한 항변 근거가 없습니다.



# 채권의 부재를 확인(1심)

소비자 대출에 대한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원고 A가 피고들에게 대출채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D와 C는 본법정의 구두 변론 기간 동안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D가 원고 A에게 청구한 522,500위안의 채권과 피고 C가 원고 A에게 청구한 151,632위안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채권의 부재를 확인(2심)

(항소인 C, 피항소인 A)

- → 유효한 할부금융 매매계약서: 금융 회사가 체결한 할부금융 매매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이 해당 거래의 조건과 법적 효과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 이 사건의 대출은 분쟁의 오토바이를 매매하고 재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상업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일반 대중에게 생소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관계를 이해하려면 계약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거나 타인의 설명을 구해야 합니다.
- 피고인 A는 경도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장애등급은 bll7.1, 즉 성인이 된 후에 정신연령은 9~12세라는 것입니다.
- 증인 E는 피고인 A에게 문서를 제출했을 때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항소인 A가 서명한 후 E는 즉시 그 문서를 회수했습니다. 내용을 검사하기 위해 피항소인 A에게 문서를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E는 양도 계약의 세부 내용은 피고인 A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관 등록을 위한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 약속어음 채권의 부재를 확인(1심)

### 약속어음의 채권 부재

- 원고 A VS 피고 C: 원고 A 승소(대만 스린 지방 법원, 2023년 458호 판결)
- 원고 A VS 피고 D: 원고 A 승소(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 2023년 690호 판결).

### 원고 D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인 D의 주장:원고 A는 송금받은 345,800위안을 부당이득였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 원고 A의 변론: 민법 제180조 제4항 반환거부





### A의 주장: 이 사건에 민법 제180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 중화민국 민법 제180조 제4항: "불법적인 이유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 다만, 불법행위의 원인이 수취인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180조 제4항의 입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방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대만 타이난 고등법원 2021년 212호 판결의 취지 참조)



### A의 주장: 결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 피항소인 D는 할부구매계약과 채무양도를 결합하여 항소인 A에 대한 소비자대출 상환청구권을 할부구매대금 청구권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소비자 대출의 물리적 성격과 법적으로 정한 최대 이자율에 대한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심이 됩니다.
- 피항소인 D는 은행 기관이 아니면 대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제3조 제1항 제5호, 제137조)과 기업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제15조 제1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소비자 대출을 할부판매 및 채무양도라는 법적 틀로 대체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습니다. 항소인 A는 275,800위안만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두 배에 가까운 522,500위안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 피항소인 D는 타인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은행법 및 기업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은"D1"을 이용하여 "에르메스"의 할부매매 사기를 저지르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상소인의 경솔함과 미숙함을 이용하여 그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가짜 매매, 진짜 대출"의 거래 방식은 형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의 주장: 불법행위 방지 (1)

- 지급행위가 불법이었는지 불법행위의 성질과 방식, 당사자 쌍방의 불법행위와 위법행위의 정도,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합니다(2002년 도쿄고등법원 판결 제2131호의 민법 제708조 해석 참조).
- 피항소인 D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민법상의 소비자대출 규정과 대출을 금지하는 회사법 제15조를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대출을 채무양도와 결합한 허위의 할부판매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D는 항소인 A의 경솔함과 미숙함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검토 기간을 제공하지 않고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D는 표준화된 계약 조건을 이용하고 할부판매와 채무양도 방식을 결합했습니다. 소비자가 스스로를 항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앞서 언급한 일본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복잡한 법률 개념과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가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질권설정 및 권리 양도를 통해 항변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상황입니다.



# A의 주장: 불법행위 방지(2)

• 피항소인 D는 사적 금융업자로서 표준화된 계약서를 활용합니다. 상소인 A를 포함한 불특정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피항소인 D가 "할부판매와 채무양도를 병행하는" 법적 틀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하고 불특정 제3자와의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상소인 A와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도 입힐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 고등법원의 사례는 형식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해당하며, 일반인은 쉽게 속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 사건의 피고는 유사한 대출 광고를 다른 버스에 게재하고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법원은 피고의 대출 원금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견해: 부정적

#### 제1심: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 2023년 제690호 판결

- 반소 피고 A는 원래 분쟁의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522,500 위안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었으나, 다른 분쟁 소송에서 이 할부매매계약으로 인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상, 반소 피고 A가 부담하는 채무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반소원고 D가 징수한 연체이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05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습니다. 이 사건의 지급이 불법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반소인 피고 A의 합리적 검토기간의 부족, 설명의무 불이행, 그리고 피고의 경솔함, 그리고 경험 부족 등에 대한 주장에 관련하여, 이러한 점들은 모두 분쟁의 할부매매 계약의 채권 존재 여부에 관한 별개의 심판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은 분쟁의 대금지급이 불법적인 사유에 의한 것인지와 무관합니다.
- 반소 피고 A가 인용한 2002년 판결 제2131호(2권 43-50쪽)의 일본 도쿄고등법원의 견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며, 채택된 법률 의견은 직접 비교 및 인용하기 어렵습니다.

### 법원의 견해: 부정적



#### 제2심:대만 타이베이 지방 법원 2024년 139호 판결

- 자금이 필요했던 항소인 A는 피항소인 D에게 연락하여 분쟁의 분할금 지급 계약서, 분쟁의 약속어음, 그리고 분쟁의 지급 지시서에 서명한 후 분쟁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지급 관계가 피항소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소인 A의 주장은 사실과 모순되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은행법 제3조 제5항은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대출 및 기타 영업활동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137조는 은행법 시행 전에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은 설립절차를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피항소인에게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회사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해도 대출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며(대법원 2012년 제414호 판결의 취지 참조), 차용인은 여전히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가 회사법 제15조를 위반하더라도, 상기 취지와 자본적 정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상소인 A는 지급이 불법한 사유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상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합리적인 검토 기간이 주어졌는지 단지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항소인에게 구속력이 있는지의 문제일 뿐, 지급 사유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급의 불법성에 대한 항소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이자가 선불로 공제되는 대출의 경우, 대출 원금은 이자가 공제된 후 차용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대법원 2023년 제1268호 판결 참조). 또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민법 제205조). 그러나 이는소비 대출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용인은 여전히 상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소인이 이자를 선불로 공제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징수하였더라도, 상기 설명에 근거하여 상소인이 위법한 사유로 자금이 지급되었다고 반환을 거부한다는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